

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“성남-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6-1공구”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·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(계약)를 할 수 없기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,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2022. 4. 26.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1. 사 업 명 : 성남-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6-1공구
2. 사업시행자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
3. 보상수탁기관 : 한국부동산원
4. 협의기간, 장소 및 방법
 - 가. 협의기간 : 본 공고일로부터 15일간
 - 나. 협의장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디아이티(주) 광교연구시설 6층
한국부동산원 남부보상사업단 (☎031-290-3222)
 - 다. 협의방법 :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,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함
5. 보상의 시기·방법 및 절차

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
6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:
 - 가. 보상금청구서 1부(협의장소에 비치)
 - 나. 손실보상협의계약서 2부(협의장소에 비치)
 - 다. 지장물(농작물) 철거 각서(협의장소에 비치)
 - 라. 영업(거주) 및 지장물소유 사실(이사)확인서·각서(협의장소에 비치)
 - 마. 인감증명서 2부(부동산매도용, 매수자 경기도)
 - 바. 주민등록초본 2부(주소변경내역 표시)
 - 사. 통장사본 1부,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
 - 아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7. 토지 등의 표시 : 별첨(보상협의통지 토지 등의 표시내역)